

KR A-01040

Rev.3, 30. August 2024

# 용어의 정의

2024. 08. 30



국가철도공단



## 경과조치

이 “철도설계지침 및 편람” 이전에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우리공단 “철도설계지침 및 편람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## 일러두기

-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책 단위로 구성된 “철도설계지침” 및 “편람”을 국제적인 방식에 맞게 체계를 코드별로 변경하였습니다.  
또한, 코드에 대한 해설 및 목차역할을 하는 KR CODE 2012, 각 코드별로 기준 변경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Review Chart 및 Record History를 제정하였습니다.
- 이번 개정된 “철도설계지침 및 편람”은 개정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각 항목별로 수정되어 공단 EPMS, CPMS에 게시될 것이니 설계적용 시 최신판을 확인 바랍니다.
- “철도설계지침 및 편람”에서 지침에 해당하는 본문은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부분이고, 해설(이전 편람) 부분은 설계용역 업무수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참고용 기술도서입니다. 여기서, 제목 부분의 편람은 각 코드에서의 해설을 총칭한 것입니다.

# 목 차

1. 용어의 정의 .....	1
RECORD HISTORY .....	3



## 1. 용어의 정의
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(1) “철도건축물”이라 함은 철도건설 및 철도운영에 필요한 역사, 승강장지붕, 사무소와 숙소, 차량기지 및 운전보안시설 등의 건축물(건축물 주변 조경시설, 건축기계설비, 터널방재설비, 철도차량검수시설 포함)을 말한다.
- (2) “건축한계”라 함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.
- (3) “일반철도”라 함은 고속철도와 「도시철도법」에 의한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.
- (4) “고속철도”라 함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·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.
- (5) “도시철도”라 함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·운영하는 철도·모노레일·노면전차·선형유도전동기·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.
- (6) “광역철도”라 함은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.
- (7) “구축한계”라 함은 전기동차전용선에서 전기·신호·통신·통로·대피장소 및 기타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구조물과 건축한계와의 사이에 설치하는 여유 공간을 말한다.
- (8) “계획설계”라 함은 발주자의 사업목표, 소요공간, 예산, 공정과 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의 스케치를 준비하는 단계로서 개념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 대지분석 자료와 사업방향을 토대로 건축물에 관한 설계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수립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.
- (9) “기본설계”라 함은 예비타당성조사, 기본계획·타당성조사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, 배치, 형태, 공사방법 및 기간,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·분석, 비교·검토를 거쳐 최적 안을 선정하고, 설계기준·설계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.
- (10) “실시설계”라 함은 기본설계단계에서 결정된 설계기준 등 제반사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실시설계 도서형식으로 충분히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.
- (11) “설계도서”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, 구조계산서, 시방서, 건축설비 계산 관계서류,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,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하며,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42조와 「건축법」 제2조 “설계도서”를 포함한다.
- (12) “시공상세도 또는 시공도(shop drawing)”라 함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42조(시공상세도면의 작성)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의 불명확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상세도면을 말하며, 현장 작업순서

에 따른 시공도 또는 제작도를 포함한다.

- (13) “공사시방서”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공사의 특수성·지역여건·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, 자재의 성능·규격 및 공법, 품질시험 및 검사,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하며,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도서가 된다.
- (14) “차량한계”라 함은 철도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위에 정지된 상태에서 측정된 철도차량의 길이와 너비 및 높이의 한계를 말한다.
- (15) “정거장”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, 화물의 적하, 열차의 조성, 차량의 입환, 열차의 교행또는 대피를 위하여 철도시설 등을 설치한 장소로서 철도역, 조차장, 신호장을 포함한다.
- (16) “역”이라 함은 열차를 착발하고 여객,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하며, 보통역·여객역·화물역으로 구분한다.
  - ① 보통역 : 여객과 화물을 같이 취급하는 역
  - ② 여객역 : 여객을 취급하는 역
  - ③ 화물역 : 화물을 취급하는 역
- (17) “역사”라 함은 여객이 열차이용을 위한 여객 및 화물 취급에 필요한 여객시설·역무시설·지원시설·화물취급시설 등의 수송 업무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건물을 말한다.
- (18) “기지”라 함은 화물의 취급 또는 차량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 화물기지, 차량기지, 주박기지, 보수기지 및 궤도기지 등을 말한다.
- (19) “건축기계설비”라 함은 냉·난방설비, 급·배수설비, 위생설비, 공기조화설비, 환기설비, 승강설비, 자동제어설비, **승강장안전문설비** 등 건축물 및 터널에 부대되는 기계설비를 말한다.
- (20) “소방설비”라 함은 소화설비·경보설비·피난설비·소화용수설비 그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(21) “사무소”라 함은 철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(지역본부, 현업사무소, 사업소, 주재 등) 등을 말한다.
- (22) “운전보안시설”이라 함은 「건축법」 제3조(적용제외)의 “운전보안시설”에 따라 열차운전을 위한 시설 및 관리·통제에 필요한 다음의 각 항의 시설을 말한다.
  - ① 수송원처소, 운전원처소, 열차검수원처소
  - ② 차량검수관련 처소 및 검수고(동력차, 수송차, 고속차량 등)
  - ③ 신호장, 신호소
  - ④ 전기·통신 및 제어·신호·운전 취급관련 처소, 관제실 및 기계실
  - ⑤ 변전소, 급전구분소, 보조급전구분소 등



- ⑥ 보선관련 처소 및 장비차고
  - ⑦ 건널목 처소, 경비처소(터널, 교량)
  - ⑧ 위의 각 시설 합계면적이 연면적의 50% 이상 포함된 복합건축물(단, 여객취급역사는 제외)
- (23) “변전건물”이라 함은 전차선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(변전소, 급전구분소, 보조급전구분소 등) 등을 말한다.
  - (24) “숙사”라 함은 열차승무원 등 철도근무자의 숙박시설을 말한다.
  - (25) “통로”라 함은 승강장과 역사,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를 말한다.
  - (26) “맞이방(대합실, 콘코스)”이라 함은 여객이 승차를 목적으로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체류, 대기, 매표, 정산 등의 접객시설과 안내, 휴게, 매점, 전시공간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.
  - (27) “승강장”이라 함은 이용객의 승·하차, 환승이 직접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.
  - (28) “여객시설”이라 함은 여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맞이방(콘코스, 대합실), 여객화장실 등을 말한다.
  - (29) “역무시설”이라 함은 역무실, 매표실 등 역사를 운용·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.
  - (30) “지원시설”이라 함은 기계실, 전기실, 신호기계실, 통신기기실등의 기능실을 말한다.
  - (31) “여객편의시설”이라 함은 역사내 매점, 자동판매기, 물품보관함, 여행센터 등의 시설을 말한다.

## RECORD HISTORY

- Rev.0('12.12.5) 철도설계기준 철도설계지침, 철도설계편람으로 나누어져 있는 기준 체계를 국제적인 방법인 항목별(코드별)체계로 개정하여 사용자가 손쉽게 이용하는데 목적을 둬.
- Rev.1('16.06.21) 철도건설기준 개선 Master Plan수립('15.12)에 따른 후속조치 및 설계기준개선 발굴과제(단기과제), 관련부서(건축설비처, 시설개량처)의 개정 요청사항 반영
- Rev.1('16.11.04) 철도설계기준 개선 발굴과제(역무실 출입문 설치기준 변경,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기준 신설, 환기구 높이 기준제시등), 기술연구처의 개정 요청사항(통신실 넓이 최적화 연구 용역 반영)을 개정(설계기준처-3075, 2016.11.04
- Rev.3('24.08.30) 관련법규 현행화, 용어정의(고속철도, 도시철도) 수정, 경과조치 및 일러두기 추가